

kiri Weekly

2015.8.31 제348호

이슈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와 시사점

글로벌 이슈

서구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과 시사점

미국 시장의 보험테크(Insurance-tech) 스타트업 동향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와 시사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 김동겸 선임연구원

요약

- 우리나라처럼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들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가중으로 공적연금을 통한 보장 수준은 축소하되, 그 빈자리를 사적연금으로 채우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
 -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 미국 등이 대표적인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로 이들 국가는 공적연금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보완재로서 적극 활용함.
-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는 대체로 공적연금 보완형 사적연금 도입, 자율형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사적연금으로 전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와 같은 사적연금 역할 제고 노력과 제도 개선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러한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 동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적연금의 제도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우선 사적연금의 기능 제고 차원에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가입한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리스터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이 요구됨.
 -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은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공사간 유기적 역할 분담차원에서 중요함.
- 또한 퇴직연금 미가입한 자(예: 전업주부 등)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자동가입하게 하되, 가입 후 탈퇴 등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율형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처럼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인구고령화,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 가중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 제고가 매우 중요함.**
 - 인구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아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절실히 요구됨.
 - 그럼에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2013년 기준으로 21.2%에 그치고 있어 사적연금 역할이 미흡한 실정임.

- **반면,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OECD 국가들은 공적연금의 한계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시행함.**
 - 이는 공적연금 대체형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 국가)¹⁾에서도 두드러진 현상임.
 - 다만,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느냐 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공적연금 대체형 국가와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함.

- **따라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금체계를 띠고 있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들이 공·사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 차원에서 사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어떻게 제고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우리나라는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고 하나, 기초연금 도입이 일천하고 전통적으로 소득비례 연금 중심의 비스마르크형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사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2. OECD국가의 연금체계 유형 및 특징



- 한 국가의 복지정책 및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 수단으로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연금제도(Pension Regime)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류 기준이 제시되어 오고 있음.
 - Esping and Anderson(1990)²⁾은 각국의 연금체계를 탈상품화외³⁾ 계층화를 기준으로 자유주의(Liberal), 보수주의(Conservative),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tic) 모형으로 분류함.
 - Myles and Quadagno(1997), Bonoli(2003) 등은 각국의 연금제도를 공적연금 제도 내용을 기준으로 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Bismarck Model)와 베버리지형 연금체계(Beveridge Model)로 분류함.⁴⁾
 - 비스마르크형은 정책목표를 빈곤 예방에 초점을 두고 정액의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베버리지형은 노년기에도 은퇴 이전의 소득 유지를 목표로 함.
 - Bonoli and Shinkawa(2005)⁵⁾은 공적연금 분류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사회보험연금체계, 다층연금체계, 약한 비스마르크연금체계(Bismarckian Lite Pension Systems)로 분류함.
 - 사회보험연금체계는 보험료에 기반을 둔 소득비례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다층연금체계는 공적연금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가능하도록 정액형태의 최저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임.
 - 약한 비스마르크연금체계는 소득비례연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급여 수준은 사회보험연금체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이 이에 해당함.
- 각국의 연금제도를 비교하기 위한 다양한 분류 체계 중에서 비교 용이성 등의 이유로 인해 비스마르크형 · 베버리지형 · 혼합형(노르딕형) 기준이 가장 빈번히 이용되고 있음.

2) Esping and Anderson(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3)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란 근로자가 본인의 노동력을 시장에서 이용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를 평가하는 지표로 평균임금근로자의 최저연금급여, 연금수령을 위한 납입기간, 연금수급가능연령 이상의 인구 비중 등을 활용함. 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전체연금에서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의료비지출 중 민간의료비 지출 비중 등이 있음.

4) 비스마르크 · 베버리지 분류모형은 국가 간 공적연금제도의 차이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소득비례급여를 제공하면서도 급여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분류해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됨. 또한 공적연금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의 연금제도를 분류함으로써,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혼합체계로 구성된 다층연금체계를 분류해 내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5) Bonoli and Shinkawa(2005), "Aging and Pension Reform Around the World", Edward Elgar.

■ 베버리지형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이 최저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빈곤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이상의 소득 보장(퇴직 전 소득지위 보장)은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연금체계임.

- 공적연금은 대개 기초연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퇴직 전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해 일찍이 중요한 노후보장 수단의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사적연금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됨.
 -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대표적인 국가임.

〈표 1〉 연금제도 유형별 특징

| 구분 | 비스마르크형 (Bismarck pension model) | 베버리지형 (Beveridge pension model) | 노르딕형 (Nordic pension model) |
|---------|---------------------------------------|------------------------------------|---------------------------------|
| 목적 | 은퇴 이전의 생활수준 유지 (상대적 생활수준) | 빈곤 완화 및 최저소득 보장 (절대적 생활수준) | 은퇴 이전의 생활수준 유지,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 |
| 정책이념 | 보수주의, 조합주의 | 자유주의 | 사회민주주의 |
| 운영형태 | 사회보험기반의 소득비례연금 | 정액급여의 기초연금 | 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 |
| 재원조달 | 사회보험료 | 조세 | 조세 및 보험료 |
| 세대내 재분배 | 높음 | 낮음 | - |
| 공적연금 역할 | 높음 | 낮음 | 중간 |
| 사적연금 기능 | 제한적(공적연금 보완) | 확대(공적연금 대체) | - |
| 사례 |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한국 (실질적) |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

주: 1) 비스마르크형은 1889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채택함. 베버리지형은 1908년 영국에서 도입하였으며, 노르딕형은 1891년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도입됨.

2) 네덜란드의 경우 연금개혁을 통해 비스마르크형에서 베버리지형으로 연금체계를 전환하였으며, 노르딕형에서 출발한 덴마크는 베버리지형으로 연금제도가 전환됨.

■ 반면, 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는 공적연금만을 통해 충분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연금체계임.

- 공적연금은 대개 퇴직직전 소득을 거의 대체할 만큼 높은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는 비례연금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상대적으로 미발달되어 있음.
 -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 미국 및 우리나라 등이 대표적인 국가임.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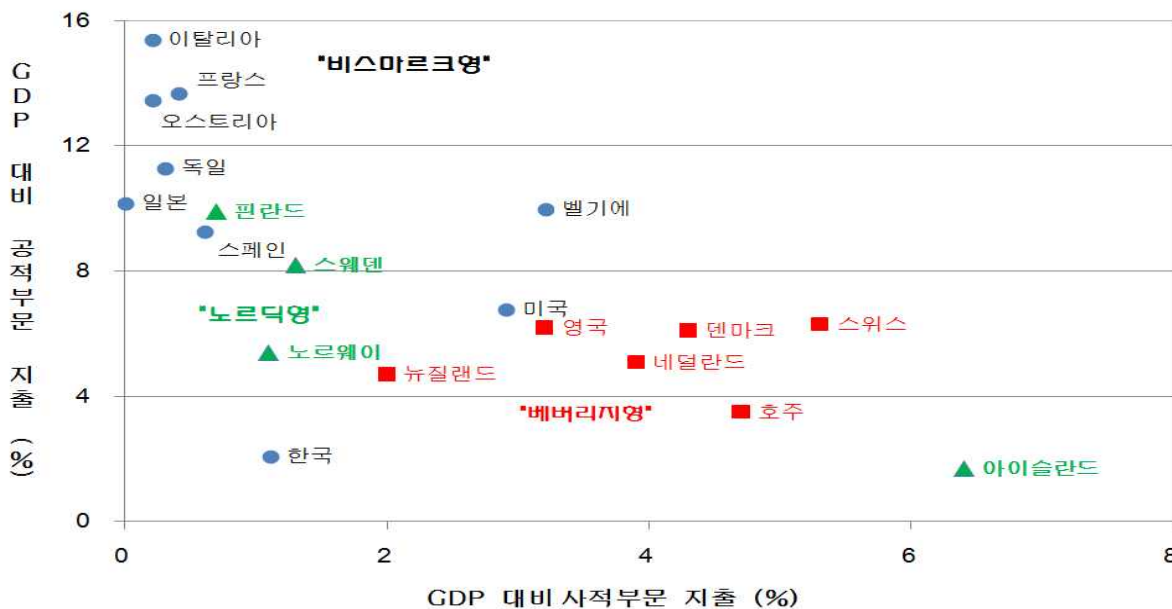
6) 공적연금(OASDI) 수준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을 발달시켜온 미국은 예외적인 국가임.

-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이들 국가에서는 대개 공·사연금의 균형적 발전이 베버리지형 국가에 비해 미진한 점이 특징임.

■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을 결합한 혼합형 연금체계는 베버리지형이 가지고 있는 낮은 공적연금 수준 문제와 비스마르크형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편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에 비례연금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연금체계임.⁷⁾

- 동 연금체계는 보편성과 급여 수준의 적절성을 잘 조화시킨 연금체계라 할 수 있는데, 보장 수준 면에서 볼 때 오히려 비스마르크형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국가로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 중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이 높았던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사적연금 발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함.⁸⁾

〈그림 1〉 연금체계 유형별 공·사연금의 지출 비중(GDP 대비 비중, 2009년 기준)



자료: OECD(2014), "OECD Factbook 2014 - Public and private expenditure on pensions: As a percentage of GDP".

7) 이용하·임병인(2013), 『국민연금보완제로서 개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p. 91 참조.
 8)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이미 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노르딕형 연금체계는 상대적으로 기초연금보다 소득비례연금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로 간주하기도 함. 따라서 연금체계는 크게 비스마르크형과 베버리지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함.

3.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보장 제고 동향⁹⁾



1)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 활성화

■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는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전하기 위해 대체로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제도”를 도입·시행하는 특징을 보임.

- 즉, 부과방식 형태의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적립식 개인연금 등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정부가 개입하고 있으며,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을 들 수 있음.

〈표 2〉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제도 비교

| 구분 | 독일(Riester) | 오스트리아(PZV) | 프랑스(PERP) |
|--------|------------------------------------|--|-----------------------------|
| 적립금 보증 | 있음 | 있음 | 없음 |
| 수급방법 | - 늦어도 85세까지 종신연금 · 30%까지 일시금 가능 | - 종신연금 또는 일시금 · 종신연금: 비과세 · 일시금: 보조금 반환 및 과세 | - 종신연금 · 20%까지 일시금 수령 가능 |
| 가입형태 | 임의가입 | 임의가입 | 임의가입 |
| 정부지원 |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 (선택안 중 유리한 쪽 적용) | 보조금 | 소득공제 |

주: PZV: Prämienbegünstigte Zusatzversicherung, PERP: Plan d'épargne retraite populaire.
자료: 보험학회 한·일 특별세미나(2014).

■ 예를 들어, 독일은 연금개혁으로 인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 부분을 사적연금을 통해 보전하고자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Rente), 뤼룹연금(Rürup Rente) 등을 도입하여 가입 시 세제혜택 및 정부보조금을 지원함.

- 리스터연금은 저소득·다자녀가구에 대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함.

9) 3장 이하에서는 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 국가를 공적연금보완형 국가로, 베버리지형 연금체계 국가를 공적연금대체형 국가로 표현하고자 함.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형태를 띠고 있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사적연금의 역할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적연금 대체형 국가와 대비하여 트렌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2001년 도입된 리스터연금은 민간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계해 판매하는 사적연금에 가입자 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며, 보조금은 가입자 자격요건에 따라 일정액을 정액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2,100유로를 상한으로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함.
- 2014년 말 기준 총 1,629만 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가입률은 35.0% 수준으로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15.7%)의 약 2배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 뮌헨연금은 리스터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계층, 특히 고소득층 및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를 대상으로 한 개인연금제도로, 이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함.

〈표 3〉 리스터 연금의 보조금 및 소득공제한도

| 구분 | 2007년 | 2008년 이후 |
|---------------------|---------|-------------------------|
| 보조금 지급을 위한 최소기여금 비율 | 연소득의 3% | 연소득의 4% |
| 기본보조금(개인) | 114유로 | 154유로 ¹⁾ |
| 자녀보조금(자녀 1인당) | 138유로 | 185유로 → 300유로(2008년 이후) |
| 소득공제한도 | 1,575유로 | 2,100유로 |

주: 부부의 경우 보조금은 308유로임.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 자율형 사적연금 자동가입제 도입

■ 미국, 캐나다 등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있는 국가는 사적연금의 역할 제고를 위해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auto-enrollment scheme)¹⁰⁾를 운영하되, 가입 후 해지는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맡기는 특징을 보임.

- 이에 반해, 영국, 뉴질랜드 등과 같이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국가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운영 또한 매우 엄격함.

10) 자동가입제도는 근로자가 취업 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탈퇴(opt-out)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하는 제도임.

〈표 4〉 주요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비교

| 국가 | 제도 | 가입대상 | 주요 특징 |
|------|--------------|--------------|---------------------------------------|
| 캐나다 | PRPP(2012) |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 · 임의가입 · 가입 후 60일 이내 탈퇴 가능 |
| 이탈리아 | TFR(2007) | 민간기업 근로자 | · 급여의 6.91% 납입 · 가입 후 6개월 이내 탈퇴 가능 |
| 미국 | 401(k)(2009) | 연금 미가입 근로자 | · 가입 후 90일 이내 탈퇴 가능 |

주: 1) PRPP: 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TFR: Trattamento di fine rapporto.
자료: OECD(2014), OECD Pensions Outlook 2014의 내용을 수정·보완함.

■ 미국은 2000년부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자동가입제도 도입 사업장의 근로자 차별 점검을 면제하는 등 2006년 이후 Pension Protection Act 시행에 따라 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

- 캐나다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입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또한 가능함.
 - 이탈리아의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월 급여의 6.91%를 자동가입제도에 납입하되, 최초가입 후 6개월 이내에 탈퇴가 가능함.

■ 이처럼 자동가입제도는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와 비중 확대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국민연금 보완형 연금체계 국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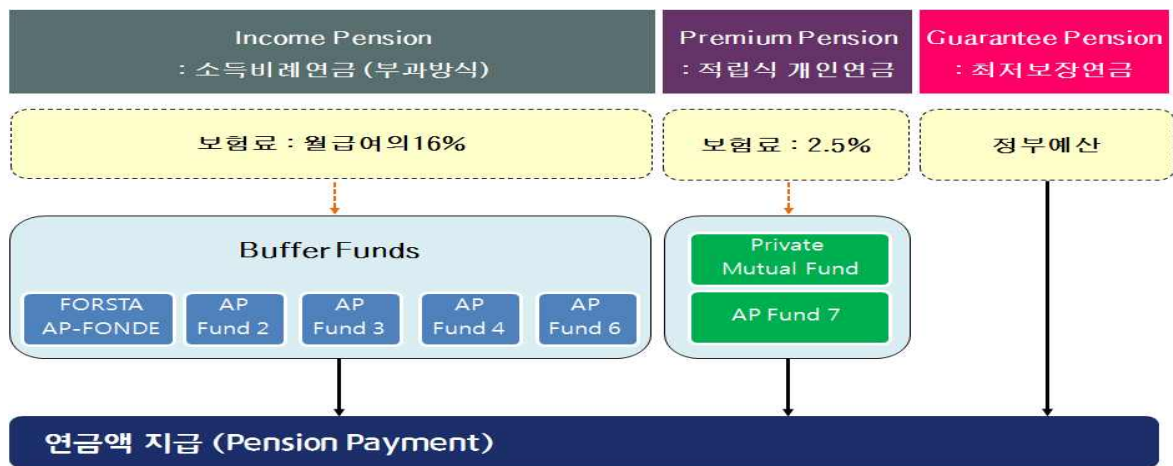
-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저축가입을 미루는 성향이 있는 반면, 일단 한번 가입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저축 관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임.

3) 공적연금 일부 개인연금 전환

■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대체기능을 지닌 국가는 공적연금의 전부를 사적연금으로 대체(예: 민영화한 칠레)하거나 공적연금의 일부를 사적연금으로 대체(예: 국민연금 적용 제외국가인 영국)하는 방식으로 사적연금의 노후보장적 역할을 제고함.

- 칠레는 1981년 기존 공적연금 대신 독립된 개인저축계좌(PSA: Personal Saving Accounts)에 연금을 적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하여 공적연금을 민영화함.
- 영국은 적용제외(Contract out)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특정 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비례 공적연금인 국가 제2연금(S2P: State Second Pension) 납입의무가 면제됨.
 - 또한 공적연금 대체형 국가는 사적연금의 노후보장 강화 차원에서 사적연금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강제화)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2〉 스웨덴의 연금제도



자료: FORSTA AP-FONDEN(2015), "ANNUAL REPORT 2014".

■ 반면, 스웨덴 등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는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개인연금 형태로 운용하게 함으로써 공사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공적연금 내에서 적립식 개인연금계좌 도입)을 도모함.

- 스웨덴 연금개혁의 핵심은 부과식 DB형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을 폐지하고 이를 명목확정기여형(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의 소득비례연금(IP: Income Pension)과 완전적립식 개인저축계정인 프리미엄연금(PP: Premium Pension)으로 전환하는 것임.
 - 보험요율 18.5% 중 16%는 NDC로 나머지 2.5%는 소득비례연금의 재원으로 배분되며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금융시장의 운용수익률과 평균수명에 결정됨.
- 기업이 원천징수형태로 18.5%의 통합보험료를 국세청에 납부하면 국세청은 다시 16%는 국민연금계정(NDC)계정에 그리고 나머지 2.5% 보험료는 개인연금저축계정(PP)으로 입금함.

■ 즉 공적연금에서 분리된 개인연금계정으로 입금된 자금은 개인이 선택한 펀드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운용되므로 국가 관리형 중앙집중식 개인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존재함.

- 연금관리청이 개인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 및 펀드를 승인하고 감독한다는 점에서 국가 관리형 개인연금의 성격이 지님.

4) 세제혜택 등 재무적 지원 강화

■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보험료 납입단계, 운영단계, 인출단계에서의 과세여부를 기준으로 EET, TEE, TET, ETT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OECD 대다수 국가에서는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EET 방식을 택하고 있음.

〈표 5〉 OECD 국가의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구분

| 과세체계 | 해당국가 |
|-------|---|
| E-E-T |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
| T-E-E | 체코, 멕시코 |
| T-E-T |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
| E-T-T |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 |
| T-T-E | 호주, 뉴질랜드, 터키 |
| E-E-E | 슬로바키아 |
| T-T-T | 헝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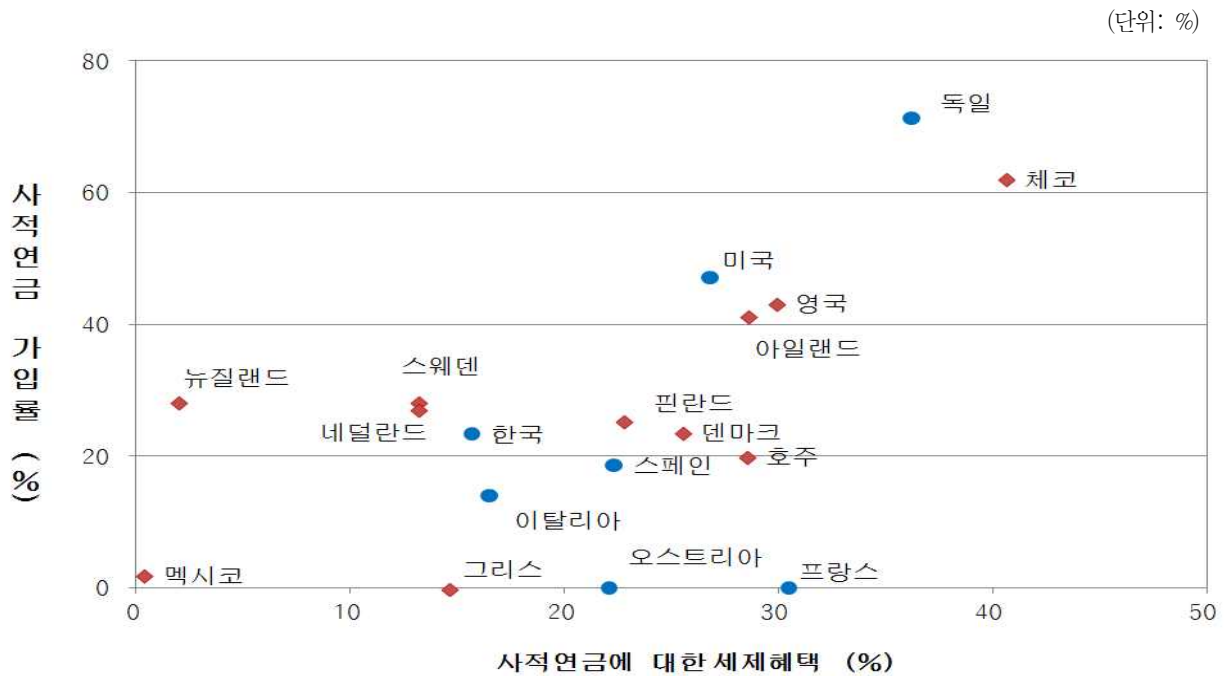
주: 각국의 과세체계는 보험료납입, 운용단계에서 발생한 수익, 인출단계에 대한 과세여부(T: 과세, E: 면제)를 기준으로 분류함.

- EET(Exempt Exempt Tax)형은 연금보험료 납부단계에서 과세면제 또는 소득공제, 운용단계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임.¹¹⁾
 -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근로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은퇴이후 소득세 부과 시,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해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조세이연효과로 인한 이득을 사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대다수 국가에서 EET 방식을 채택함.

11) EET 방식의 경우에도 사적연금 납입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수준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완전한 형태의 EET 방식은 존재하기 어려움.

■ 세제혜택이 사적연금 가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는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를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음(〈그림 3〉 참조).

〈그림 3〉 사적연금 세제혜택과 연금가입률



주: 1) 세제혜택은 납입보험료 대비 세제인센티브 비중으로, 납입보험료에 대한 공제액, 운용수익 비과세부분 등을 포함함.

2) 사적연금 가입률은 2011년 기준임.

자료: OECD(2013); Yoo and De Serres(2004).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국민연금 보완형 국가와 비교 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예를 들어, 미국의 401(k)의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해 18,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나,¹²⁾ 우리나라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세제혜택 수준이 낮음.¹³⁾

12) <http://www.irs.gov>.

13) 각국의 경제(GDP)규모를 고려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는 낮은 수준임.

4. 시사점



- 우리나라처럼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국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공적연금을 통한 보장수준을 축소하면서 그 빈자리를 사적연금으로 채우는 제도 개선이 추진됨.
 - 제도 개선은 대체로 공적연금 보완형 사적연금 도입, 자율형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공적연금 일부분의 사적연금 전환,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짐.
- 이와 같은 제도 개선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와 같은 사적연금 역할 제고 노력과 제도 개선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제도 개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적연금의 역할 제고가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먼저, 사적연금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세제혜택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적연금 가입 시 세액공제(입구세제)혜택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고 연금소득세(출구세제)부담으로 연금가입의 유인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로 사적연금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리스터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이 시급이 요구됨.
 -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은 정부가 인증한 개인연금에 가입 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공·사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 셋째, 퇴직연금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퇴직연금을 자동가입하게 하되, 가입 후 탈퇴 등은 보다 유연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율형 자동가입제도의 도입검토가 필요함.
 - 사적연금에 일단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반영하여 연금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스웨덴 등의 경우처럼 공적연금의 일부를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개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도 공·사간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kiri**